

결 정

2018 - 3109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성완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2월 19일자(캡처시각) 「[속보] 컬링 국가대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2. 19. 22:22>

『[평창] 러시아 컬링 동메달 신혼부부 남편, 금지 약물 양성 반응
[일간스포츠] 입력 2018.02.19 11:18

2018 평창 올림픽에서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동메달을 딴 러시아 출신 올림픽선수(OAR)가 도핑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IOC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컬링 믹스더블에서 동메달을 딴 러시아 부부 중 남편인 알렉산드르 크루셀니츠키가 금지 약물 성분인 멜도니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스포츠 전문 라디오 방송 '스포츠-FM' 역시 '크루셀니츠키의 도핑 샘플에서 멜도니움 성분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멜도니움은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에서 심근경색, 협심증 치료에 널리 애용되는 약으로 스포츠 선수들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세계 반도핑기구(WADA)가 2016년 1월부터 금지약물로 지정한 약물이다. 러시아 테니스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멜도니움 양성 반응을 보여 1년 2개월 자격정지를 받았다.

크루셀니츠키는 러시아 컬링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3일 컬링 믹스더블 3·4위전에서 노르웨이의 크리스틴 스카슬린(32)-망누스 네드레고텐(28)을 8-4로 꺾었다.

특히 지난 여름 결혼한 아내 아나스타샤 브리즈갈로바와 함께 이번 대회에 나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아내인 브리즈갈로바는 눈에 띄는 미모로 이번 대회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다.

평창올림픽 OAR 본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우리나라 선수의 도핑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면서도 "향후 24시간 이내에 도핑 샘플B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수 이름과 종목 등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샘플 B는 선수가 처음 제출한 도핑 샘플에 이상이 발견됐을 때 최종적으로 위법 여부를 밝히는 샘플이다.

러시아컬링연맹 회장 드미트리 슐비셰프는 "크루셀니츠키의 도핑 샘플에서 멜도니움 성분이 발견됐다는 공식 확인은 아직 없다"면서 "알렉산드르와 얘기했는

데 그는 내게 거둬 아무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일본 쇼트트랙 사이트 게이가 사전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인 아세타졸아마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한편 한국의 장혜지-이기정 조는 지난 10일 연장 접전 끝에 브리즈갈로바-크루셀니츠키에 패한 바 있다. 이형석 기자』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377646>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평창 올림픽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에 참가해 동메달을 딴 러시아 출신 올림픽선수(OAR) 부부 중 남편인 알렉산드르 크루셀니츠키가 금지 약물 성분인 멜도니움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 여자컬링대표팀 승승장구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어서, 국적을 표기하지 않고 [속보]까지 붙인 「[속보] 컬링 국가대표, 금지 약물 양성 반응」라는 제목만 보면 국내 뉴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사에 사용한 사진은 2월 13일 OAR 선수들이 동메달을 확정짓고 환호하는 모습으로, '게티이미지' 사진임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평창] 러시아 출신 컬링 부부, 믹스더블 동메달 '감격'



[일간스포츠] 입력 2018.02.13 11:22 수정 2018.02.13 13:58

러시아에서 온 컬링 부부가 노르웨이의 컬링 커플을 꺾고 믹스더블(혼성 2인조) 동메달을 땀다.(중략)

배영은 기자

사진=게티 이미지 코리아』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368456&cloc=rss%7Cisplus%7Ctotal_list>

2018년 3월 14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박 재 현	박재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인터넷게시물, 댓글, 기타 시청각물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 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